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4가단19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8.6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2, 13, 16, 17, 12의 각 점 을 순차 연결한 선내 C(야채)부분 17㎡를 인도하고,

나. 2017. 3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

판사 오성우

별지